



[시행 2021. 10. 21.] [대통령령 제31866호, 2021. 7. 6., 제정]

법무부 (형사법제과) 02-2110-3712

- 1 () 이 영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 () 법무부장관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톱 치료가 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스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3 ()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생활행태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전정보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1. 법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
 2.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무
 3.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
 4.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
 5.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에 관한 사무
 6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변경 등 청구에 관한 사무
 7. 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무
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한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③ 보호관찰소의 장, 교정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(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를 포함한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4 ()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<제31866호, 2021. 7. 6.>

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
- 2)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
- 3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및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차	2차	3차 이상

		위반	위반	위반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(검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1항	300	700	1,000
나.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	150	300	500